

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

의안 번호	15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9. 8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함에 있어 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상자 : 총 2명

- 2018평창 기념재단 대외협력처장 최명규
- 前평창경찰서장 박은식

나. 근거규정 :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및 시행규칙

다. 내 용 : 명예군민증서 및 패 수여

라. 공적사항

연번	대상자	공적내용
1	성명 : 최명규(60세, 남) 직위 : 2018평창 기념재단 대외협력처장	- 상기인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사업사무차장을 역임하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기여하였으며, - 현재는 2018평창 기념재단 대외협력처장직을 수행하면서 평창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물론, 올림픽 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용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음.

2	<p>성명 : 박은식(55세, 남)</p> <p>직위 : 現강원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前평창경찰서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기인은 제65대 평창경찰서장을 역임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교통 지원 및 방법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평화올림픽 개최에 기여하였으며, - 특히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그 외에 아동지킴이 발대식,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등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음.
---	--	--

3. 명예군민 선정현황

구 분	합 계	재외동포	내국인	비 고
계	25	1	24	
1999년	2		2	김기섭, 황범식(탈런트)
2002년	1	1		이우현(가산 이효석의 자)
2008년	3		3	홍성태(이울의료봉사회 책임교수), 김명원(범우 대표이사), 윤재원(前 평창교육장)
2010년	2		2	강봉호(前 평창교육장) 양종렬(前 평창경찰서장)
2013년	1		1	최현길(前 평창교육장)
2014년	5		5	김진선(2018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) 나경원(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) 박성주(前 평창경찰서장) 최현숙, 이병진 부부(이웃돕기 기부채납)
2015년	1		1	김광식(前 평창경찰서장)
2016년	3		3	여형구(2018동계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) 조원진(제20대 국회의원) 백진(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)
2017년	3		3	고창영(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사무총장) 황영조(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감독) 박지성(맨체스터유나이티드 멤버서더)
2018년	2		2	이선주(KT지속가능경영단장)

				김기홍(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)
2019년	2		2	송승환(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·폐회식 총감독) 박경식(사단법인 길림성기업족조선족기업협회 사무국장)

관계법령 발취

□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국인과 외국인·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 명예군민증서(이하 "명예군민증" 이라 한다)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예군민증 수여결정)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
② 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

제2조(수여대상자 요건)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의 수여대상자는 아래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내국인(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)과 외국인 및 해외동포로 한다.

1. 문화예술,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
2. 관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
3.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의 복지증진
4.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
5. 기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

제5조(명예군민에 대한 특전)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중한 예우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1. <삭제 2011.7.15>
2.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및 사유시설의 지역주민과 동일한 대우
3.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지역단위 행사시 초청
4. 소식지 등 정기발행 홍보물의 송부
5. 기타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격 부여 등